제213회 원자력 안전메시지



그린휘슬(Green Whistle)

제도 도입 및 운영



그린휘슬 개요

CEO 지시사항

배경

- 설비관련 잠재현안에 대한 신고방안 마련('18.12)
- 발전소 안전운전을 위한 견제기능 강화방안 강구('19.11)
- 그린휘슬 제도의 건설/수력/양수 사업소 확대 적용('20.4)

시스템 구축

- 안전 최우선 환경, 제도 및 문화 구현을 위한 종사자 인적행위 개선, 설비관련 잠재현안에 대한 신고방안 마련
- 종사자 안전건의제도(ECP)를 활용한 종합적 개선 보완

개 선 내 용

- 제보자 보호조치 강화 및 만족여부 재검토 절차 마련
- 안전관련 우려사항 신고대상 확대
- 중요도에 따른 시정조치 조직 분류 및 신속성 증진





운영개선통지(CAP) 등의 방법으로 건의하는 제도

- ✓ 종사자안전건의제도(ECP) 원자력안전에만 적용
- ✓ 그린휘슬(Green Whistle) 산업안전 및 화재분야를 포함해 건설원전과 수력/양수까지 대상 확대



그린휘슬 건의자, 건의 대상

건의 자



원자력/수력/양수 발전소 및 건설소 종사자 (협력사 포함)

◆ 종사자의 인적행위, 설비현안 및 산업안전 등 **안전 운영을** 위해 개선이 시급한 사항

◆ 운영기술 지침서 미적용 등 법규 위반우려가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

◆ 안전에 중요한 제안에 대하여 전사 공통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공유가 필요한 사항

의 대

상

건



그린휘슬 건의 방법



운영개선통지(CAP) 작성

건의자



- 통지유형[운영개선 PR]
- 작성동기[종사자안전건의제도 (그린휘슬)]
- 통지목적코드[안전문화]
- 발행분야[원자력안전,발전운영 , 설비관리, 화재, 기타]



신속조치·제보자 보호기능 설정

건의자



- **기명/무기명**[제보자 선택]
- → 비공개 시 본인, 코디, 본사 담당자만 확인 가능
- → 처리결과 별도 알림
- **즉시알림**[제보자 선택]
- → 소속 조직장에 즉시 통보
- → 관련 본사 처·실장 추가 통보



즉시알림 발행 기준

- 종사자의 인적행위, 설비현안, 산업안전 및 화재 등 사업소의 안전운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하여 소속 사업장의 장 및 본사 담당 처장에게 즉보가 필요한 사항
- *표준안전-1078B 붙임8.4의 예시 참조
- 운영기술지침서 미적용, 보고대상사건의 보고 누락,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법규 위반우려가 있어 즉시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
- 안전에 중요한 제안에 대해 전사 공통 적용여부 확인을 위해 본사 관련 처·실장과의 공유가 필요한 사항 등

* 운영개선시스템 건설/수력/양수 '20.12 적용 예정



그린휘슬 통지발행

▷★통지제목	☞ Q중복발행체크
등지발맹	
D * 통지유형 1	운영개선 (PR) ✔ M1/M2 통지발행기준 ② *작성동기 ② 종사자안전건의제도(그린휘술) Q
◎ 통지목적코드	안전문화(그린휘슬) ✓ ▷ 발행분야 ③ 원자력안전 ✓
D +기능위치	• 내역 발전소별 대표 가능위치 • 중요도 가능위치 통지발형 이력
☑ 설비	Q 愛亞到
☑ ★대상발전소	= 선택 =
■ *ECP 4	○기명 ◉ 무기명 ⑤ 즉시알림 : ☑ 발전소장, □ 발전처장, □ 설비기술처장, □ 안전처장
☑ LCO적용코드	
☑ 발견위치	
⑥ □ +상세내용 • ◆□	1. 발견일시 : 2. 현황 및 문제점 : 3. 조치(요청)사항 : 4. 기타 특기사항 :
☑ 관련 절차서 /지침 ①	÷
o +발견일시	20201022 🛅 00시 🗸 00분 🗸
© ★무선순위	● 일반 □ ※타발전소 전파 필요 체크 <u>도움말</u>
2 파일첨부	찾아보기 ☆ 여러 (첨부파일크기제한 : 5M) ☆ 첨부확인 [LDM등록가능한 문서포멧] ※암호화(DRM)해제 후 첨부파일 등록!!
☑ ★처리결과회신	• E-Mail 11290973@khnp.co.kr • SMS 문자 발송



그린휘슬 처리 절차

① 제보, 건의 (건의자)

- · 기명, 무기명 선택
- 즉시 알림 선택

③ 안건 검토(발전소장)

현장확인 및 경위 파악

④ 중요도 판단 (발전소장)

- ㆍ 경미/중간 수준
- ㆍ 심각 수준

⑥ 시정조치 (발전소장 or 조치부서)

시정조치 후 제보자 만족 시 종결





② 문자, 메일알림 (그린휘슬 시스템)

- ·(필수) 발전소장/건설소장
- · (선택) 본사 처·실장*





⑤ 내부 보고 (발전소장)

- · **(본사)** 기술부사장 / 품질안전본부장 등
- · (사업소) 원전본부장
- * 본사 처·실장: 발전처장, 설비기술처장, 안전처장, 원전건설처장, 수력처장 (제보자 선택)



중요도에 따른 시정조치 분류



중 간 사규, 절차서 및 지침 등 한수원 규정 관련 사항 본사 보고 및 협의를 통해 즉시 조치

경 미 심각, 중간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발전소장 인지 후 지속적인 주의 관찰 또는 조치 부서 위임



건의자 비밀보장 및 보호

누구나 안심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건의자 보호



- ✓ 건의자 신상정보 비공개 유지 철저
- ✓ 문제제기에 대한 조직내 차별, 부당한 대우 등 불이익 발생 방지
- ✓ 종사자의 고의가 아닌 실수나 착오는 처벌하지 아니함
- ✓ 건의사항의 긍정적 해결을 위해 노력

원자력안전법

[보호] 제102호(종업원에 대한 보호)

원자력관계 사업자는 종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(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위원회 또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주는 행위)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.

공익신고자보호법

[의무] 제7호(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) 공직자는 <mark>공익침해해위 발견 시</mark> 조사기관, 수사기관 또는 국민인권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[보호] 제11호(인적사항의 기재 생략), 제12호(신고자 비밀보장의무), 제13조(신변보호 조치), 제14조(책임 감면), 제15조(불이익조치 금지), 제16조(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), 20조의2(특별보호조치)



그린휘슬 제도 활성화

안전중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공정문화에 입각한 균형 잡힌 책임 및 보상 시행

부서장급 코디 운영 • 사안의 신속한 처리 및 비밀 유지를 위해 관리자 그린휘슬 코디 지정 (가동원전) 안전부장 (건설원전) HSSE부장 (수력/양수) 재난보안/감사 파트장

안 건 적 극 처 리 • 본사 접수 무기명 안건 중 ECP 비해당 사안도 본사 관련부서 적극처리 유도 (목적) 단순 반려처리로 인한 건의자의 상실감 및 제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 방지 (대상) · ECP 비해당 사안 중 전사 공통현안으로 본사 검토 및 조치 필요사항 · 단순 민원성 안건도 최대한 검토 후 관련부서 안내

안 건 처 리 책 임 • 안건에 대한 조직적 묵인, 의도적인 지연처리 등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감사실 통보

우 수 제 안 포 상 • 건의에 대한 긍정적 동기 부여를 위해 **우수제안 포상제도 운영** (마일리지 포상) 우수 제안에 대해 건별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상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(원자력안전 유공 포상) 최다 제안 사업소 및 최우수 안건 제안자에 대한 가점 부여

용기있는 문제제기!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 입니다.

